

#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2월 14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4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 농어촌 특산단지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상설, 전시 판매함으로써 농어촌 특산품의 판로 확대로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

4. 주요 골자

-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은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877번지에 두도록 함.
-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농어촌 특산품의 전시, 판매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전시, 판매 품목은 특산단지의 생산제품 및 농수축산물 가공제품, 농수축산물,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으로 함.
- 운영은 위탁으로 하며 위탁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관리운영비는 일체 수탁자의 부담으로 함.
- 판매장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수탁자는 전시 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5. 검토 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 특산단지에서 생산된 특산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도 단위 전문매장을 설치하여, 특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특산단지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 구조 개선으로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상설전시판매장을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에 설치하고, 전시, 판매 품목을 지정하여 전시, 판매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어촌특산단지, 유관 단체등에 위탁운영 하는 것 등의 특산품상설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특산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 됩니다.

## 6. 첨부

-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